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14일, 박찬원 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19년 1월 2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찬원 의원)

가. 제안이유

호적법 폐지('08.1.1.)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음에도 호적법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출서류 항목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현행은 사망의 경우, 증명서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되었을 때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사망사실이 정리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호적법상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 “호적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
- 보상심의회 간사의 담당직위 현행화(안 제6조제1항)
- “정책기획담당주사” → “기획담당”
-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규칙안은 2008년 호적법 폐지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호적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출서류 항목의 신설과 정비, 약칭·띄어쓰기 정비, 보상심의회 간사의 담당직위 현행화, 조문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이 주요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조례 라 한다)”를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청구할때”를 “청구할 때”로, “군의 회의장”을 “평창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나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호적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된 경우”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자료1부”를 “자료 1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상해”를 “장애·상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접수한때”를 “접수한 때”로,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4조”를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4

조”로,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35조 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 감사실장으로 한다.
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영 제35조 제3항제4호”를 “영 제35조제3항제4호”로, “도내”를 “도 내”로, “교수등”을 “교수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상심의회의원간사는 기획감사실정책기획담당주사”를 “보상심의회의원 간사는 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접수	제 호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년 월 일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상병(사망) 일 시			상병(사망) 장 소	
	상병(사망) 원 인 및 발 생 경 위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송 금 처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3. 2. 4.					
경 유	제 호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직 인
평 창 군 수 귀하					

사 망 상 병 경 위

평 창 군 의 회 의 장 의 견

※ 평창군의회에서 사망·상병경위와 의장의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첨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평창군의</u> <u>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u> <u>조례(이하"조례 라 한다)</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u>조례</u>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 자가 보상금을 <u>청구할때</u>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u>군의</u> <u>회의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사망의 경우 <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사망진단서 1부(호적상</u> <u>사망사실 정리가 안된 경</u> <u>우)</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u>자료1부(사실혼</u></p>	<p>제1조(목적) ----- 「<u>평창군</u> <u>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u> <u>에 관한 조례</u>」----- ----- -----.</p> <p>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u>평창</u> <u>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u> <u>급에 관한 조례</u>」 (이하 “<u>조례</u>” <u>라 한다</u>) -- <u>청구할 때</u>----- ----- <u>평창</u> <u>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u> <u>이라 한다)</u>---.</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u> <u>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u> <u>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u> <u>부</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가족관</u> <u>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u> <u>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된</u> <u>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 <u>자료 1부</u>-----</p>

관계의 경우)

다. (생략)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 다. (생략)

② (생략)

③ 군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군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이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장애·상해--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접수한 때-----
-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4조-----

----- 평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영 제35조 제3항제1호의 지방
의회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
천하는자로 한다.

2. 영 제35조 제3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으로 한다.

3. 영 제35조 제3항제3호의 의무
직공무원은 군의 보건의료원
장으로 한다.

4. 영 제35조 제3항제4호의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내 대학의 법학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생략)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
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 의
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 회의
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 의
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평창군지

1. 영 제35조 제3항제1호의 지방
의회 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
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영 제35조 제3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
라 한다)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 영 제35조 제3항제3호의 의무
직공무원은 군 보건의료원장
으로 한다.

4. 영 제35조 제3항제4호-----

----- 도내 -----

교수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
-----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

----- 「평창군

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